

# 예산총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| 305,965,770 | 9,178,973 |
| 일반회계          | 274,713,066 | 8,241,392 |
| 특별회계          | 31,252,704  | 937,581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| 31,252,704  | 937,581 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| 5,394,302   | 161,829  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| 20,849,772  | 625,493   |
| 의료보호특별회계      | 227,295     | 6,819     |
|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| 4,781,335   | 143,440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600,000천원이고 재난·재해예비비는 3,859,882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